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20. 6. 18.

발 의 자:정희용·이채익·김용판

안병길·추경호·김웅

엄태영·이명수·지성호

권명호·김병욱·김영식 김희곤·정진석·윤두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제정된 「점자법」제4조제1항에서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이며,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와 국민은 점자의 발전과 보전·계 승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점자는 시각장애인의 고유 문자임에도 불구하고 점자출판물의 감소로 인해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으며, 한글점자의 날 기념행사는 시각장애인 관련 민간 단체행사로 개최되고 있어 점자사용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한글 점자를 창안한 날인 11월 4일을 한글 점자의 날로 지정하여 점자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과 점자사용 여건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5조).

법률 제 호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점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점자의 날에 적합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념행사의 추진) 국가는	제15조(점자의 날) ① 시각장애인
점자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의 점자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위하여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점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
<u>수 있다.</u>	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4일을 점자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에 따른 점자의 날에 적합
	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할 수
	<u>있다.</u>